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82
----------	-------

발의연월일 : 2018. 5. 8.

발의자 : 한정애 · 김성수 · 이정미

홍일표 · 신창현 · 임종성

송옥주 · 이학영 · 남인순

유승희 · 김상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의 무구매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로 한다.

제2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 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u>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온</u> <u>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u> <u>제의-----</u> -----.</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 <u>&lt;신 설&gt;</u></p>	<p>제2조의2(적용범위) ----- ----- -----.</p> <p>1. (현행과 같음) <u>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u> <u>저탄소 제품에 해당하는 환경</u> <u>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u> <u>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u> <u>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u></p>
<p>2. · 3. (생 략)</p>	<p>2. · 3. (현행과 같음)</p>